

의안번호	제 114 호
의정 년월일	1996. 11. 27. (제 59 회)

의결사항
의안가결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제출자	보은군수
제출 년월일	1996. 11. 21.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1. 21.

의안

번호

114

제출자 : 보은군수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므로서 군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상반기 : 예산, 하반기 : 결산)로 나누어 공개
- 공개대상범위를 군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공개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예산 7개사항, 결산 7개사항을 명시
- 공개방법은 지역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지역주민의 상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과 국가·도·군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등에 대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4개 사항을 명시

□ 관계법령발체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제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안자 의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따라 군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 할 수 있도록 주민공개회수, 주민공개대상범위, 공개방법 등 관련규정을 정하여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의 재정운영 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증감 및 현재액
7.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품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 및 군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